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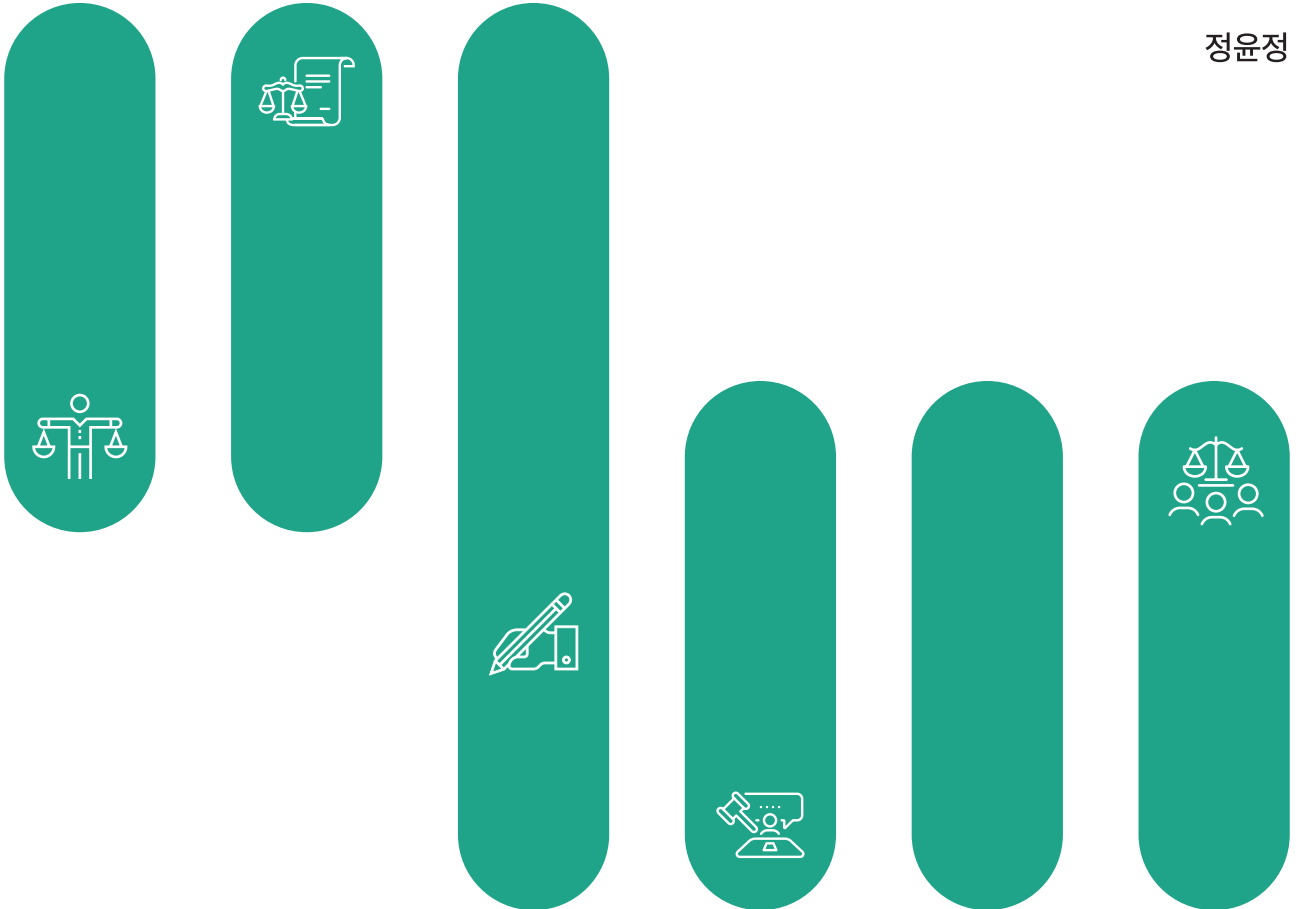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정윤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정윤정



CONTENTS

ISSUE
PAPER

요약문	4
Chapter. 01	9
<hr/>	
입법평가의 필요성 및 주요 쟁점	
1. 입법평가의 필요성	9
2. 입법평가의 주요 쟁점	10
Chapter. 02	12
<hr/>	
입법 효과 분석	
1. 설문조사 결과 분석	12
2. 신고·제재 현황 분석	17
Chapter. 03	20
<hr/>	
주요 개정 연혁	
1. 부정청탁 대상직무 추가	20
2. 선물·경조사비 가액 범위 변동	22
3. 선물범위에 유가증권 포함 변동	24
4.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및 신고 방법 조정	25
5.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26
Chapter. 04	29
<hr/>	
개선방안에 대한 제언	
참고문헌	3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정윤정¹⁾

요약문

1. 입법평가의 필요성 및 주요 쟁점

- ◎ 공직사회에서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관행을 근절하여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이 국민적 관심 속에서 시행(16.9.28.) 된지 약 7년이 지난 2023년 현재, 법이 의도한 입법 목적이 달성되고 있는지, 또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영향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그간 청탁금지법 운영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보완사항 및 주요 개정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에도 입법효과를 지속·발전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2. 입법 효과 분석

- ◎ 설문조사²⁾ 분석
 - 법 적용대상자인 공직자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공직사회에서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접대·선물 제공이 감소하였다고 인식하고 있음.³⁾ 또한 국민·공직자의

1) 한국법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2)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실시한 설문조사로, 일반국민·공직자·언론인·교원·영향업종(음식점업 및 농수축산화훼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조사.

3) 청탁금지법 시행 후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이 '감소했다' 응답 : 일반국민 66.7%, 공무원 92.9%.

대다수는 청탁금지법 시행이 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며,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부탁·접대·선물을 부적절한 행위로 인식하게 되는 등 청렴에 대한 인식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또한 국민·공직자의 절대다수는 청탁금지법의 반부패 효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청탁금지법 시행을 지지하고 있음.⁴⁾

- 언론인과 영향업종(음식점업 및 농수축산화훼업) 종사자는 일반국민과 공직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지지나 반부패 효과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 비율이 낮지만, 이들 유형에서도 과반수가 넘는 비율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지지와 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음.

◎ 신고·제재 현황⁵⁾ 분석

- 청탁금지법 시행인 '16.9.28. 이후부터 2022.12.31.까지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는 총 13,524건이며, 연도별로는 2018년(4,386건)과 2019년(3,020건)에 신고 건수가 가장 많았고, 이후 감소하여 최근에는 연간 1,400건 내외로 안정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음. 2018~2019년에 위반신고가 많았던 것은 이 시기에 실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및 특별 집중신고기간 운영 등의 특이사항으로 부정청탁 신고가 급증하였고, 이후 지속적인 점검 및 제도개선 등으로 관련 신고가 줄어들어 든 것으로 보임.
- 같은 기간 제재를 받은 공직자들은 총 1,879명으로 나타남. 1,879명을 위반유형별로 살펴보면 금품등 수수 1,767명, 부정청탁 101명,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 11명으로 나타남. 2018년 이후 매년 300~400건 내외의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음. 청탁금지법에 대한 충분한 인지를 바탕으로 신고가 원활히 이뤄지고 있고, 법 위반에 대한 제재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3. 주요 개정 연혁

- ◎ 청탁금지법은 시행 이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응하며 법의 입법취지를 살리면서도 현실여건에 맞도록 개정하는 과정을 거쳐 왔음. 먼저, 부정청탁 대상직무 확대와

청탁금지법 시행 후 공직자에 대한 금품제공이 '감소했다' 응답 : 국민 70.8%, 공무원 96.0%.

청탁금지법 시행 후 공직자에 대한 접대 및 선물 제공이 '감소했다' 응답 : 국민 71.4%, 공무원 95.4%.

4) 반부패 효과에 대한 긍정적 평가 : 일반국민 78.7%, 공무원 95.7%.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한지지 : 일반국민 87.5%, 공무원 96.6%.

5)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2023.6.29.),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402010000&bid=4A&act=view&list_no=45806

관련해서는 법 운영과정에서 부정청탁을 제재할 필요가 있음에도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열거되지 않아 제재할 수 없는 사례들이 일부 발생하였고,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형의 집행과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와 같은 교도관 업무, 견습생·인턴 등의 모집·선발, 장학생 선발, 논문심사·학위수여, 실적 등의 인정업무가 새롭게 추가됨.

- ◎ 금품등 수수 금지와 관련해서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선물·경조사비의 가액 범위 변동이 있었는데, 핵심은 농수산물에 대한 특례로 요약할 수 있음. 농축수산업계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 유관 단체 및 관련 부처의 가액 상향 요구 등을 반영하여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은 처음 시행 당시에는 일반적인 선물과 구분 없이 5만원이었다가 이후 10만원으로, 다시 15만원으로 상향되었음(설날, 추석 시기에는 20만원으로 특례를 인정하였다가 이후 30만원으로 상향). 또한 경조사비 가액범위는 축의금·조의금에 대해서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하였지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에 대해서는 10만원으로 유지하였음.
- ◎ 외부강의등 사례금 신고와 관련해서는 초과 사례금 수수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취지는 살리면서 과도하게 번거로운 신고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처음 시행당시에는 사례금을 받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전 신고하던 것을 사례금을 받는 경우에만 사후 신고를 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등 신고 대상 및 방법을 간소화함. 또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간 사례금의 차이, 공무원·공직유관단체 내부 직급별 사례금의 차이,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교직원간 사례금의 차이, 공직유관단체 언론사와 일반 언론사 임직원간 사례금 상한액 차이에 대한 혼란 및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이러한 차이를 해소하였음.
- ◎ 신고자 보호·보상과 관련해서는 비실명 대리신고 도입,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결정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신설, 구조금 지급근거 신설 등 신고자 보호·보상을 강화하였음.

4. 개선방안에 대한 제언

- ◎ 부정청탁 규율과 관련해서는 부정청탁 행위유형을 열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청탁금지법 특성상 부정청탁을 제재할 필요가 있음에도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열거되지

않아 제재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상직무에 포함이 요구되는 취약분야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함.

- ◎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가액 범위와 관련해서는 그간 법령을 개정하여 농축수산물 선물의 가액 범위 특례를 규정한바 있으나, 향후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의 적정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검토(예를 들어 3~5년마다 검토)하여 고시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 더불어 그간 청탁금지법에 대한 주 논의와 쟁점이었던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가액 범위 논의에서 더 나아가 법의 본질적인 사안에 보다 중점을 둔 논의와 분석도 필요함. 예를 들어 청탁금지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금품등 수수 금지는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 입증에 곤란한 경우 「형법」상 제재를 받지 않는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취지이기 때문에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있는 금품등 수수는 「형법」상 뇌물죄 등이 최대한 적용되어야 하고, 「형법」이 적용될 수 없을 때 보충적으로 청탁금지법을 적용해야 하는데 이에 반하는 사례가 없는지, 청탁금지법의 주요한 특징인 양벌규정에 따른 제재 또는 면책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그간의 축적된 청탁금지법 운영 현황 및 판례를 토대로 분석·검토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임.

- ◎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여전히 다른 부패방지법제에 비해 신고자 보호 규정이 미흡한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관련 벌칙(신고자 비밀보장 위반, 신고 방해 및 취소 강요 금지 위반,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자, 보호조치결정 불이행자 등에 대한 벌칙) 강화,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절차 일시정지 제도 도입 등 신고자 보호 규정 강화가 요구됨.

- ◎ 법 위반사항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제재를 위해서는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위반사실을 통보하는 주체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현재 관할법원에 위반사실을 통보하는 주체를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장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위반행위 신고를 받고 조사하는 감독기관 등의 장까지 통보 주체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Chapter



입법평가의 필요성 및 주요 쟁점

1. 입법평가의 필요성	9
2. 입법평가의 주요 쟁점	10

입법평가의 필요성 및 주요 쟁점

1. 입법평가의 필요성

-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은 공직자등⁶⁾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등의 금품등의 수수를 금지하여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5.3.27. 제정되어 2016.9.28. 시행되었음.
- ◎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에도 공직자 부패행위는 「형법」이나 형사특별법에 따라 제재되고 있었지만, 「형법」상 뇌물죄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처벌하기 힘든 한계가 있었고, 공직자가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였음에도 직무관련성·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아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었음. 청탁금지법은 직무관련성·대가성이 없더라도 금품등 수수를 제재하고, 금품등 수수가 없는 부정청탁행위도 제재하고자 제정·시행되었음.⁷⁾
- ◎ 국민적 관심과 지지 속에서 청탁금지법이 시행 된지 약 7년이 지난 2023년 현재 법이 의도한 입법 목적이 달성되고 있는지, 또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영향은 어떠한지 살펴보고, 그간 청탁금지법 운영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보완사항 및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함으로써 향후에도 입법효과를 지속·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함.

6) “공직자등”은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을 말함.

7)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해설집, 2020, 20쪽.

2. 입법평가의 주요 쟁점

- ◎ 일반국민, 법 적용대상자인 공직자등, 영향업종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제재 현황 분석을 통해 입법효과를 분석하고,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의 주요 개정사항 분석 및 개정의 적정성 검토 등을 통해 향후 발전방안을 검토함.

Chapter



입법 효과 분석

1. 설문조사 결과 분석	12
2. 신고·제재 현황 분석	17



입법 효과 분석

1. 설문조사 결과⁸⁾ 분석

○ 설문조사 개요

- 설문조사는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분석함. 표본구성 현황은 <표1>과 같음.

표1 표본구성 현황⁹⁾

그룹		구성	할당 수		표본오차	조사기간·방법
일반국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800명		±3.5%p	2021. 7. 22. ~ 8. 04. (전화조사)
법 적용 대상	공직자	국가직/지방직 공무원	550명	350명	±4.2%p	2021. 7. 23. ~ 8. 04. (전화조사)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200명		
	언론인	중앙지/지방지 기자, 방송기자, 인터넷신문기자	150명		±8.0%p	2021. 7. 26. ~ 8. 09. (웹조사)
교원		전국 초중고 및 대학교 교원	300명		±5.6%p	2021. 7. 23. ~ 8. 09. (전화조사&웹조사)
영향업종		전국 음식점업 및 농수축산화훼업	200명		±6.9%p	2021. 7. 23. ~ 8. 04. (전화조사)
합계			2,000명		±2.2%p	

- 설문조사를 보면, 법 적용대상자인 공직자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공직사회에서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접대·선물 제공이 감소하였다고 인식하고 있음. 또한 국민·공직자의 대다수는 청탁금지법 시행이 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며,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8)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효과 분석을 통한 발전방향 모색 연구, 2021, 3~71쪽.

9) 국민권익위원회, 앞의 책, 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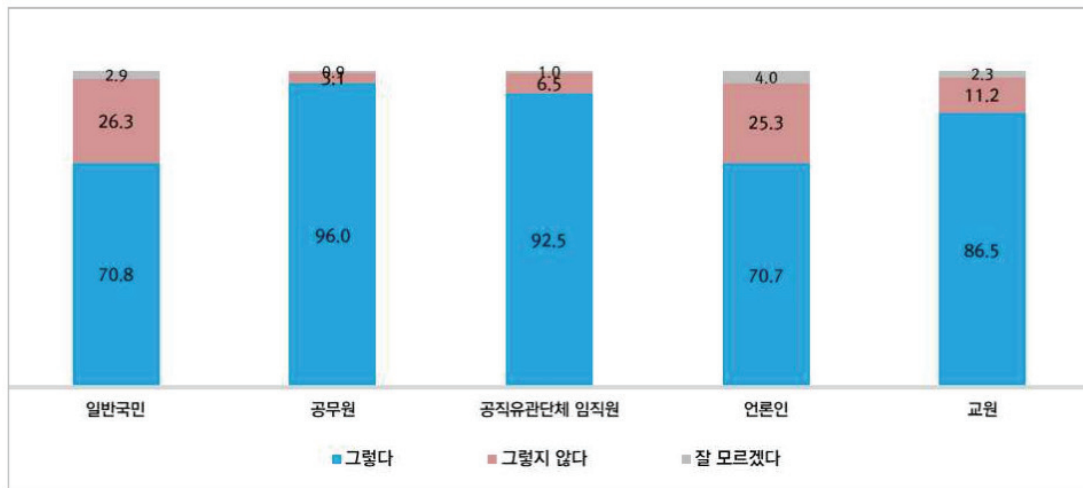
부탁·접대·선물을 부적절한 행위로 인식하게 되는 등 청렴에 대한 인식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또한 국민·공직자 절대다수는 청탁금지법 시행을 지지하며, 청탁금지법의 반부패 효과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언론인과 영향업종 종사자는 일반국민과 공직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지지나 반부패 효과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 비율이 낮지만, 이들 유형에서도 과반수가 넘는 비율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지지와 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음. 구체적인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 청탁금지법 시행의 공직 청렴성 제고 효과 분석

- 청탁금지법 시행 전과 시행 이후 5년이 지난 2021년을 비교한 결과, ‘공직자에 대한 금품 제공 행위가 감소하였다’에 대해 공무원(96.0%), 공직유관단체 임직원(92.5%), 교원(86.5%), 일반국민(70.8%), 언론인(70.7%) 모두에서 ‘그렇다’는 응답이 높은 비율로 나타남. 대체적으로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공직자에 대한 금품 제공이 감소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1 청탁금지법 시행 후 금품 제공 감소¹⁰⁾ (단위 : %)

법 시행 전과 법 시행 5년이 지난 지금(2021년)을 비교했을 때 공직자에 대한 금품 제공 행위가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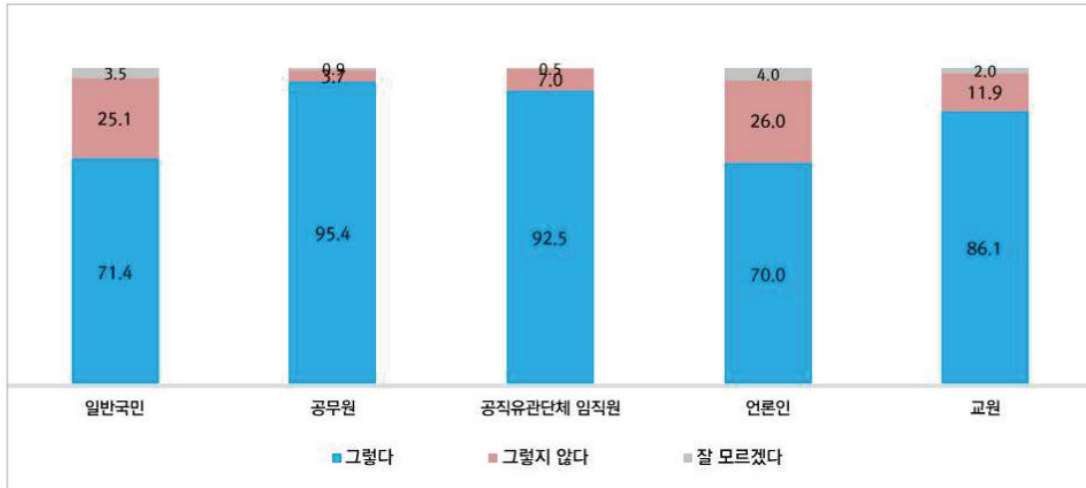
- ‘공직자에 대한 접대, 선물 제공 행위가 감소하였다’에 대해서도 공무원(95.4%), 공직유관단체 임직원(92.5%), 교원(86.1%), 일반국민(71.4%), 언론인(70.0%) 모든 유형에서 ‘그렇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며, 금품 제공 행위 감소와 유사한 비율로 나타남.

10) 국민권익위원회, 앞의 책, 34쪽.

그림 2 청탁금지법 시행 후 접대 및 선물 제공 감소¹¹⁾

(단위 : %)

법 시행 전과 법 시행 5년이 지난 지금(2021년)을 비교했을 때 공직자에 대한 접대 및 선물 제공 행위가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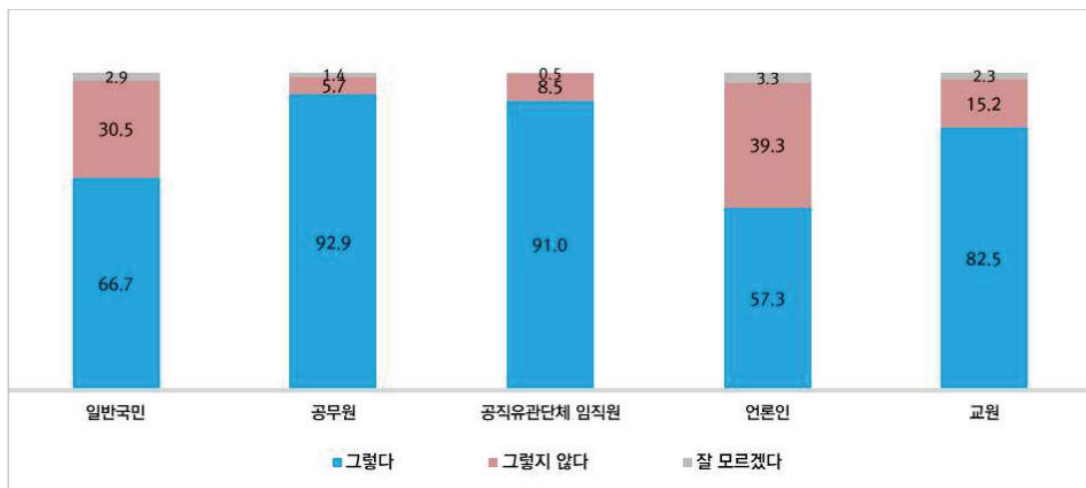


-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 행위가 감소하였다’에 대해서는 공무원(92.9%), 공직유관단체 임직원(91.0%), 교원(82.5%)에서 높은 비율로 응답함. 일반국민(66.7%), 언론인(57.3%)의 ‘그렇다’는 응답은 공직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기는 했지만, 이 유형에서도 과반수가 넘게 ‘그렇다’고 응답함. 금품 제공, 접대·선물 제공이 감소했다는 응답과 비교하면 부정청탁이 감소했다는 응답이 모든 유형에서 다소 적게 나타남.

그림 3 청탁금지법 시행 후 부정청탁 감소¹²⁾

(단위 : %)

법 시행 전과 법 시행 5년이 지난 지금(2021년)을 비교했을 때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 행위가 감소하였다



11) 국민권익위원회, 앞의 책, 33쪽.

12) 국민권익위원회, 앞의 책, 32쪽.

◎ 사회·문화적 영향 분석

- “그간 공직자들에게 일부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부탁, 접대, 선물 등을 부적절한 행위로 인식하게 되었다.”라는 응답은 공직자들의 85.7%, 일반국민의 81.3%로 나타남. 특히 법 적용대상자인 공직자들에서는 2016년에 비해 16.7% 포인트로 큰 폭으로 증가함. 청탁금지법 시행이 관행적으로 묵인되어 왔던 청탁과 접대에 대해서 공직자와 국민들 모두 부적절하게 인식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됨.
- 청탁금지법 시행이 우리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공직자들의 93.5%, 일반국민의 87.1%가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라고 응답함. 법 적용대상자인 공직자들의 경우 2016년에 비해 8.4% 포인트 증가한 수치임.

표 2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인식 변화 및 사회적 영향¹³⁾

(단위 : %)

설문	응답자 유형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16년 대비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부탁·접대·선물에 대해 부적절한 행위로 인식하게 되었다	공직자등	69.0	80.3	78.3	84.9	87.8	85.7	16.7%p
	일반국민	76.0	77.6	64.5	79.5	82.2	81.3	5.3%p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공직자등	85.1	90.1	92.3	93.2	93.5	93.5	8.4%p
	일반국민	84.3	87.3	87.5	87.7	88.1	87.1	2.8%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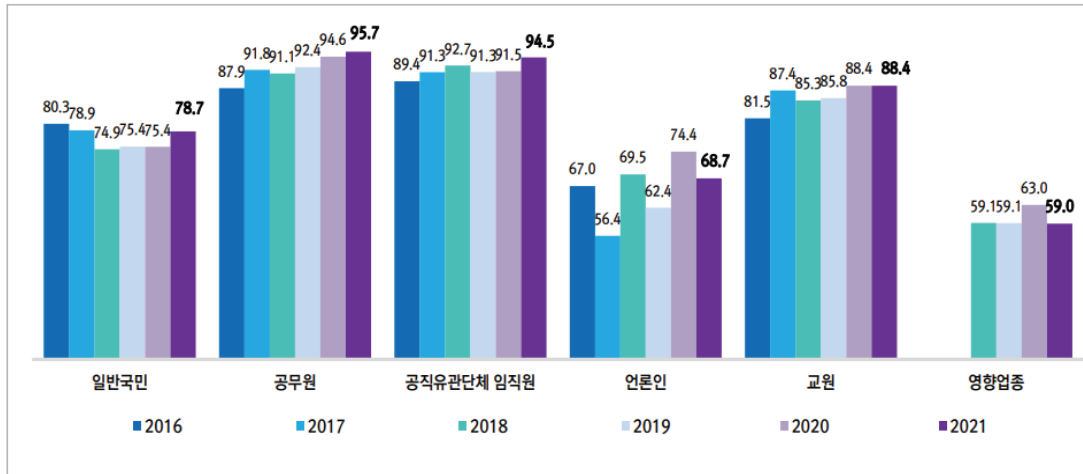
◎ 청탁금지법의 반부패 효과 분석

- 청탁금지법 시행이 공직사회의 부조리 관행이나 부패문제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일반국민(78.7%), 공무원(95.7%), 공직유관단체 임직원(94.5%), 교원(88.4%)에서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높은 비율로 나타남. 2016년과 비교하면 일반국민은 1.6%p 소폭 하락하였지만, 법 적용대상자인 공무원(7.8%p), 공직유관단체 임직원(5.1%p), 교원(6.9%p)에서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시행 직후보다 상승함.
-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언론인(68.7%)과 영향업종 종사자(59.0%)에서는 일반국민과 공직자보다는 낮은 비율이기는 하지만 과반수 넘는 비율로 ‘도움이 된다’고 응답함.

13) 국민권익위원회, 앞의 책, 81쪽.

그림 4 청탁금지법 시행이 공직의 부조리 관행이나 부패문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¹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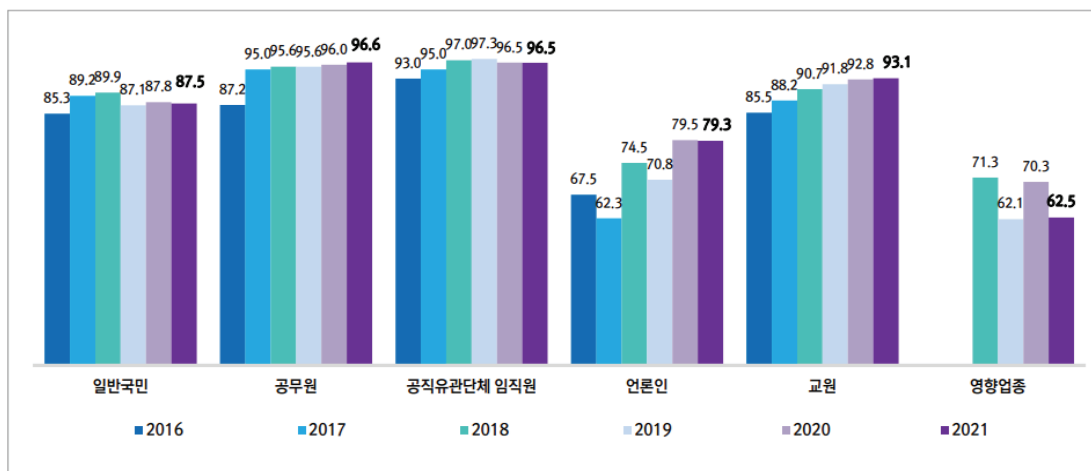


◎ 청탁금지법에 대한 지지 분석

- 청탁금지법에 대한 지지는 처음 시행부터 높은 지지율을 나타냈는데, 시행이후 5년이 지난 시점인 2021년까지 지지한다는 응답은 꾸준히 상승함. 유형별로 일반국민(85.3% → 87.5%), 공무원(87.2% → 96.6%), 공직유관단체 임직원(93.0% → 96.5%), 언론인(67.5% → 79.3%), 교원(85.5% → 93.1%)의 지지율은 상승하였고, 영향업종 종사자(71.3% → 62.5%)에서는 지지율이 다소 하락함.

그림 5 청탁금지법 시행지지 여부¹⁵⁾

(단위 : %)



※ 2016-2018년에는 청탁금지법 시행 찬반 여부를 묻고, 2019-2021년에는 청탁금지법 시행지지 여부를 물음
 ※ 영향업종은 청탁금지법 시행 찬반/지지 질문을 2018-2021년 조사에서만 물음

14) 국민권익위원회, 앞의 책, 64쪽.

15) 국민권익위원회, 앞의 책, 6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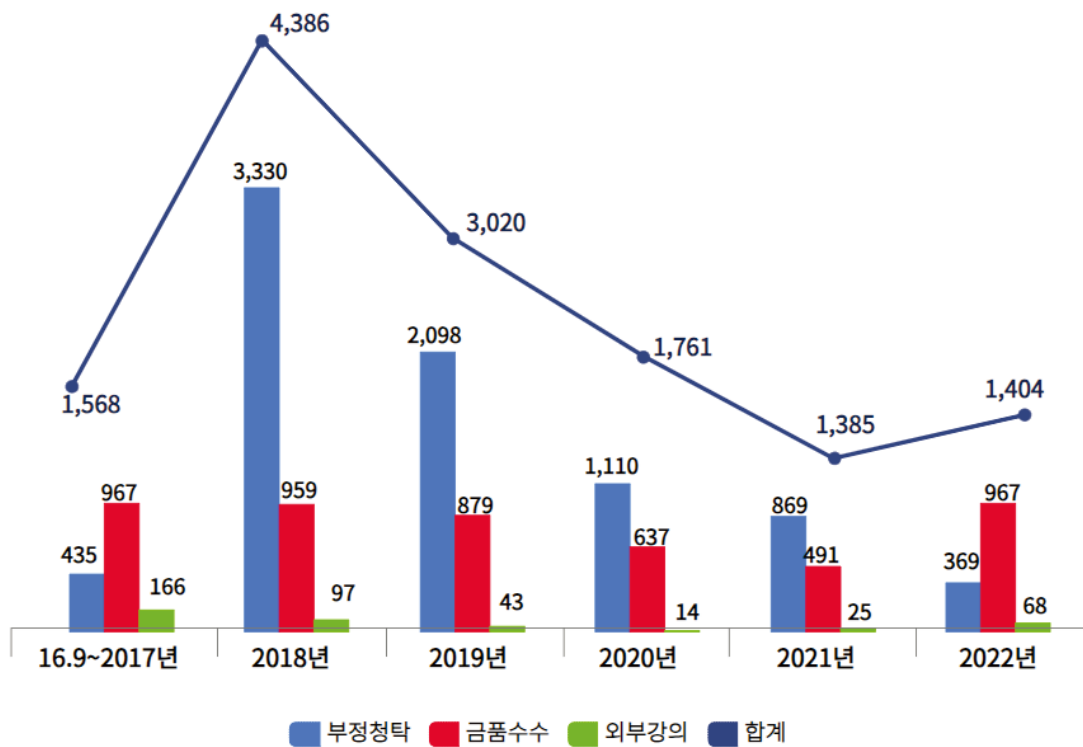
2. 신고·제재 현황¹⁶⁾ 분석

◎ 위반신고 현황

- 청탁금지법 시행인 '16.9.28. 이후부터 2022.12.31까지 각급 공공기관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는 총 13,524건임. 연도별로는 2016~2017년 1,568건에서 2018년 4,386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 이후 2019년 3,020건, 2020년 1,761건, 2021년 1,385건, 2022년 1,404건으로 감소하며 최근에는 연간 1,400건 내외로 안정화된 모습임.
- 2018~2019년에 위반신고가 많았던 것은 이 시기에 실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및 특별 집중신고기간 운영 등의 특이사항으로 부정청탁 신고가 크게 급증했고, 이후 지속적인 점검 및 제도개선이 이뤄지면서 관련 위반신고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됨.¹⁷⁾

그림 6 연도별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접수 추이

(단위 : 건)



※ 외부강의의 위반신고는 초과 사례금 신고

16)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2023.6.29.),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402010000&bid=4A&act=view&list_no=458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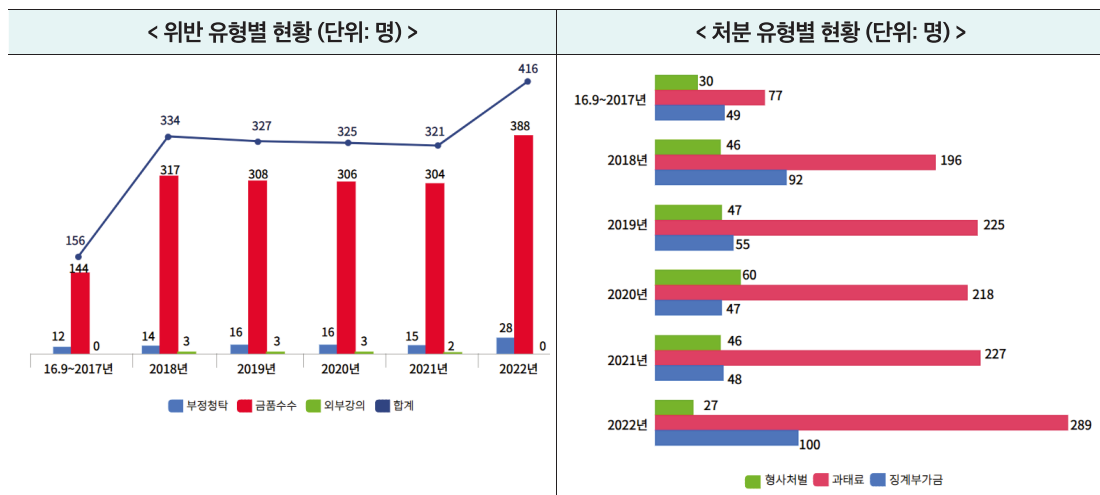
17)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2022.5.17.),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402010000&bid=4A&act=view&list_no=39144

- 위반유형별 신고 건수는 청탁금지법 시행인 '16.9.28. 이후부터 2022.12.31.까지 부정청탁 총 8,211건(60.7%), 금품등 수수 총 4,900건(36.2%),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 총 413건(3.1%) 순으로 나타남.
 - 부정청탁 신고는 2018년에 3,330건으로 급증한 이후에는 감소추세를 보여 2022년에는 369건으로 나타남. 부정청탁 신고가 이 시기에 많았던 이유는 앞서 살펴본 것 같이 이 시기에 있었던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특별 집중신고기간 운영 등 특이사항이 영향을 미쳤고, 이후 관련 점검 및 제도개선 등으로 부정청탁 신고가 줄어들어 든 것으로 보임.
 - 금품등 수수 신고는 2020년(637건)과 2021년(491건)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900건 내외로 유지되고 있음.
 - 외부강의등 신고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6~2017년 166건에서 2022년 68건으로 감소됨.

◎ 공직자등 제재 현황

- 청탁금지법 시행인 '16.9.28. 이후부터 2022.12.31.까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공직자등은 총 1,879명이고, 유형별로는 금품등 수수로 1,767명, 부정청탁으로 101명,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 수수로 11명이 제재를 받았음. 2018년 이후 매년 300~400건 내외의 제재가 이루어져 안정적으로 법이 운영되며 위반자에 대해서도 제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 처분 유형별로는 과태료 1,232명(65.6%), 징계부가금 391명(20.8%), 형사처벌 256명(13.6%) 순으로 나타남.

그림 7 청탁금지법 위반 공직자등 제재현황



Chapter

3



주요 개정 연혁

1. 부정청탁 대상직무 추가	20
2. 선물·경조사비 가액 범위 변동	22
3. 선물범위에 유가증권 포함 변동	24
4.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및 신고 방법 조정	25
5.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26

1. 부정청탁 대상직무 추가

○ 청탁금지법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있으며,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부정청탁을 한 사람은 과태료 처분대상이 됨. 부정청탁행위란 법상 열거된 14가지 대상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법령을 위반하여’ 또는 ‘지위·권한을 남용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함.¹⁸⁾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에 대한 보다 명확한

1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법률 제18576호, 2021. 12. 7. 일부개정)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5. 29., 2021. 12. 7.>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등 법령(조례·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2.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3. 모집·선발·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4.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의결·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5.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장학생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6. 입찰·경매·개발·시험·특허·군사·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7.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8.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하거나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9.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
10.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논문심사·학위수여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1. 병역판정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인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판정 또는 인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3.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
14.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형의 집행,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부패 빈발분야의 대상직무와 관련된 부정청탁 행위유형을 열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¹⁹⁾ 각종 인허가나 승인, 과태료·벌칙금 등 부과, 인사업무, 입찰·계약업무, 평가·판정 업무, 조사·단속·수사 업무 등 직무관련자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들은 대부분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해당하지만,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대상직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음.

- ◎ 실제로 청탁금지법 시행 초기에 교도관이 수용자의 청탁으로 외부의 연락을 주선하기 위해 통신장비 반입이 금지된 수용동에 휴대폰을 반입하는 등 청탁금지법을 비롯한 그 외의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형벌법규의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으므로 교도관이 수용자를 지도하고 계호하는 과정에서 재소자와 그의 가족 간 연락을 주선한 행위는 청탁금지법 제5조가 규정한 부정 청탁 대상 업무 14가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되었음.²⁰⁾ 이와 같이 법 운영과정에서 부정청탁으로 제재할 필요가 있음에도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열거되지 않아 제재할 수 없는 사례들이 발생함.

- ◎ 일반국민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2020년 8월 설문조사²¹⁾에서는 장학생 선발, 논문심사·학위수여 등 부정청탁 대상직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모든 조사대상에서 10명 중 약 8명 이상으로 나타나 부정청탁 대상직무 확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됨.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들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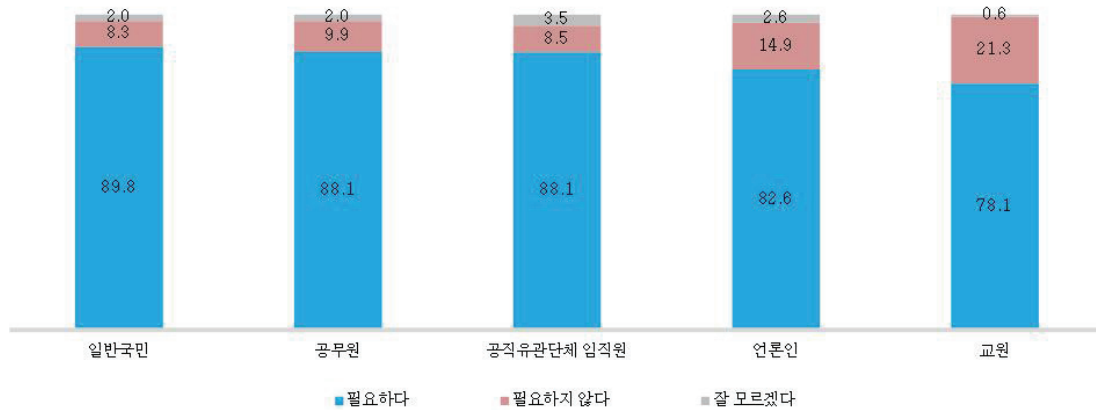
19)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해설집, 2020, 44쪽.

20) 대전지방법원 2017. 9. 27. 선고 2017고합125 판결. 동 판결에서 교도관이 수용자와 외부의 연락을 주선하는 행위가 사건의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를 곧바로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업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로 보아 형사 처벌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다.

21)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효과분석을 통한 발전방향 모색 연구보고서, 2020, 72쪽.

그림 8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직무 확대 필요성²²⁾

(단위 : %)



- 위와 같은 부정청탁 제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21.12.7. 청탁금지법 제5조가 개정되고 2022.6.8. 시행되어 부정 청탁 대상직무에 형의 집행,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와 같은 교도관 업무, 견습생·인턴 등의 모집·선발, 장학생 선발, 논문심사·학위수여, 실적 등의 인정업무가 새롭게 추가되었음.

2. 선물·경조사비 가액 범위 변동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금품등 제공자와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일체의 금품등수수를 금지²³⁾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고·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은 가액 범위 내에서 허용이 됨. 그간 선물과 경조사비 가액 범위는 일부 조정이 있었고, 음식물 가액 범위는 변동이 없이 유지되고 있음.
- 선물의 가액 범위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처음 시행 당시에는 선물의 종류와 관계없이 5만원 이었다가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가공품²⁴⁾에 한해 가액범위가 상향됨. 가장 최근인 2023.8.30. 시행 기준으로 일반적인 선물은 5만원,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가공품은 15만원이고, 설날과 추석시기에는 농수산물과 농수산물가공품 선물에 한해 30만원으로 정하고 있음.

22)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효과 분석을 통한 발전방안 모색 연구, 2020, 54쪽

23) 금품등 가액이 1회 100만원을 초과(또는 연 300만원 초과)하면 직무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되고, 가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과태료(수수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부과대상이 됨.

24) 농수산물가공품은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을 말함.

- 농수산물물 제외한 선물의 가액 범위는 처음 시행당시와 마찬가지로 5만원으로 변동이 없고,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에 한해 가액 범위를 상향(5만원 → 10만원 → 15만원) 하였고, 명절시기에는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가액 범위를 더 상향(20만원 → 30만원)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었음.
-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에 대한 특례를 인정한 것은 집중호우, 태풍, 가뭄 등 자연재해와 고물가, 수요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에 기인함.²⁵⁾
- 또한 선물 가액 상향을 요구하는 유관 단체, 국회, 관계부처의 건의가 이어졌고²⁶⁾,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기존 금액을 초과하는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상당수의 국민의견²⁷⁾과 코로나 19 당시에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농수산물 선물의 가액 범위를 상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상당수의 국민의견²⁸⁾을 고려하면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에 한한 가액범위 상향은 그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다른 품목과의 형평성, 입법취지 저해 우려 등을 고려하면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의 추가적인 가액범위 상향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경조사비는 처음 시행 당시 10만원이었다가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으로 하향되었고,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만 10만원으로 유지됨.

◎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음식물·경조사비·선물 가액 범위의 구체적인 변동내역은 <표3>와 같음.

25)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23-33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의 개정 이유 참조.

26)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21-2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의 개정 이유 참조.

27) 농축수산물에 한해 가액범위를 초과하는 선물을 예외적으로 허용해도 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일반국민의 45.1%는 찬성, 52.3%는 반대로 응답함(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1년 성과분석 및 발전방향 모색 연구, 2017, 126쪽.)

28)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금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일반국민의 46.4%는 침체된 경기 진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응답. 52.2%는 입법취지에 맞게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함(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효과분석을 통한 발전방향 모색 연구보고서, 2021, 113쪽.)

표 3 음식물·경조사비·선물의 가액 범위 변동 현황

시행 시기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2016.9.28.	3만원	• 10만원	• 5만원
2018.1.17.	상동	•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	• 5만원. 단,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은 10만원
2020.9.10.	상동	상동	• 5만원. 단,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은 10만원 • 2020년 추석명절 기간에 한해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은 20만원 ²⁹⁾
2021.1.19.	상동	상동	• 5만원. 단,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은 10만원 • 2021년 설 명절 기간에 한해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은 20만원 ³⁰⁾
2022.1.5.	상동	상동	• 5만원. 단,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은 10만원 •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의 기간에 한해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은 20만원 ³¹⁾
2023.8.30.	상동	상동	• 5만원. 단,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 포함)은 15만원 •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의 기간에 한해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 포함)은 30만원 ³²⁾

3. 선물범위에 유가증권 포함 변동

◎ 선물 범위의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처음 시행 당시(2016.9.28.)에는 선물을 ‘금전 및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또는 유가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여 유가증권도 선물에 포함되어 있었음.

◎ 이후 유가증권은 사용이 현금과 유사하고 사용내역 추적이 어려워 부패에 취약한 이유로 선물의 범위에서 제외됨.(2018.1.17. 시행)

◎ 그 이후 유가증권의 종류에 따라 선물 범위 포함을 달리 정하였는데, 유가증권 중 특정 물품 또는

29) 임시적인 특례규정을 두어 2020년 추석 명절 기간인 2020년 9월 10일부터 2020년 10월 4일까지에 한해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은 20만원으로 일시적 상향함.

30) 임시적인 특례규정을 두어 2021년 설 명절 기간인 2021년 1월 19일부터 2021년 2월 14일까지에 한해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은 20만원으로 일시적 상향함.

31) 이전의 임시적 특례와 다른 점은 특정 연도에 국한하지 않고 설날·추석 기간은 지속적으로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가액범위를 20만원으로 규정함.

32) 이 시기 개정 역시 임시적 특례와 달리 특정 연도에 국한하지 않고 설날·추석 기간은 지속적으로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가액범위를 30만원으로 규정함.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물품 및 용역상품권은 선물 범위에 포함하고,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백화점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문화상품권 등 현금화가 가능해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금액상품권은 선물 범위에서 여전히 제외함.(2023.8.30. 시행)

4.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및 신고 방법 조정

- 공직자등의 강의·강연·기고 등은 전문지식의 활용·공유라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회적인 금품 수수의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음.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을 제한함으로써 우회적인 금품 수수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음.
- 처음 시행 당시(2016.9.28.) 외부강의등 사례금은 공무원(국공립 학교 교직원 포함)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공직유관단체 언론사 포함)에 대해서 <표3>에서 보는 것과 같이 직급별로 상한액에 차이를 두었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간의 사례금 차이도 존재하였음.
 - 사립학교 교직원, 사립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에 대해서는 직급별 구분 없이 상한액을 일률적으로 시간당 100만원으로 설정하였음. 단, 국공립학교인지 사립학교인지, 공직유관단체 언론사인지 일반 언론사인지에 따라 사례금 상한액의 차이가 있었음.

표 4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2016.9.28. 시행), 변경 전

구분	공무원 (국공립 학교 교직원 포함)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공직유관단체 언론사 포함)		사립학교 교직원 사립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
	장관급 이상	50만원	-	-	
1시간 상한액	차관급	40만원	기관장	40만원	100만원
	4급 이상	30만원	임원	30만원	
	5급 이하	20만원	그 외 직원	20만원	
사례금 총한도	1시간 상한액의 150/100 초과 불가				제한 없음

- 이후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간 사례금의 차이, 공무원·공직유관단체 내부에서의 직급별 사례금의 차이,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교직원간 사례금의 차이, 공직유관단체 언론사와 일반 언론사 임직원간 사례금 상한액 차이에 대한 혼란 및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
-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간의 구분 및 직급별 차이를 없애고 상한액을 40만원으로 동일하게 일원화함.(2020.5.27.시행)
 -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공직유관단체 언론사와 일반 언론사의 사례금 상한액 차이도 해소하여 모든 각급 학교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에 대해 동일하게 시간당 100만원으로 적용함.

표5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2020.5.27. 시행), 변경 후

구분	공무원(국공립 학교 교직원 제외)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공직유관단체 언론사 제외)	각급 학교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
1시간 상한액	40만원	100만원
사례금 총한도	1시간 상한액의 150/100 초과 불가	제한 없음

- 외부강의등에 대한 신고 대상 및 방법 간소화도 추진됨. 처음 시행 당시(2016.9.28.)에는 사례금을 받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직무와 관련된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사전 신고하여야 하고,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였음. 시행 초기 사례금을 받지 않는 외부강의등도 신고대상에 포함되었고, 신고도 사전에 해야 하는 절차상 번거로움으로 사례금 상한액 초과 수수보다는 지연신고 및 미신고가 외부강의등 위반신고의 대부분인 98.7%를 차지하는 양상을 보였음.³³⁾
 - 이후 초과 사례금 수수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취지는 그대로 살리면서 과도하게 번거로운 신고 절차는 간소화하여 효율적인 법의 준수 및 운영을 위한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신고는 사례금을 받는 경우에만 하도록 하고,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되도록 신고 대상 및 방법이 간소화되었음.(2020.5.27.시행)

5.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 청탁금지법상 신고에는 공직자등이 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 이행으로서의 신고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가 발생했을 때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는 위반행위 신고가 있음. 신고자 보호의 대상이 되는 신고는 법적 의무 이행을 위한 신고와 위반행위 신고 모두 대상이 되고, 신고자 보상의 대상이 되는 신고는 위반행위 신고만 해당됨.
- 처음 시행 당시(2016.9.28.) 청탁금지법은 신고자 보호에 관하여는 일부는 직접 규정하고, 일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규정을 준용함. 신고자 보상에 관하여서도 일부는 직접 규정하고, 일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규정을 준용함.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신고자 보호·보상 규정이 강화될 때 청탁금지법도 동일하게 반영하지 못한 면이 있었지만, 이후 청탁금지법도 다음과 같이 두 법의 강화된 신고자 보호·보상 규정을 일부 도입함.(2022.6.8. 시행)

33) 국민권위원회, 보도자료(2019.11.1.),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402010000&bid=4A&act=view&list_no=8930

- 비실명 대리신고를 신설하여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대리인인 변호사의 이름을 기재해 신고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신고자 비밀보장을 강화함.
- 이행강제금을 신설하여 불이익조치를 받은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결정을 정해진 기한까지 취하지 아니한 경우 매년 2회의 범위에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하여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가능해짐.
- 구조금 지급근거를 신설하여 신고자 및 협조자, 그 친족·동거인이 신고와 관련하여 임금 손실 등 피해를 입었거나 치료비, 이사비 등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구조금을 지급하여 신고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음.

Chapter

4



개선방안에 대한 제언

개선방안에 대한 제언

- ◎ 입법효과 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탁금지법은 공직사회에서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감소, 사회적인 청렴 인식 개선 등 긍정적인 입법효과를 거두고 있지만, 이러한 입법효과를 향후에도 지속·발전시키기 위해 보완·개선해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함.
- ◎ 부정청탁 규율과 관련해서는 부정청탁 행위유형을 열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청탁금지법 특성상 부정청탁을 제재할 필요가 있음에도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열거되지 않아 제재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향후에도 부정청탁과 연결된 부적절한 관행이 있고 제재가 필요한 취약분야에 대한 주기적 검토가 필요함.
- ◎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의 가액 범위와 관련해서는 그간 법령을 개정하여 농축수산물 선물의 가액 범위 특례를 규정한바 있으나, 향후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의 적정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기적으로 검토(예를 들어 3~5년마다 검토)하여 고시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³⁴⁾
- ◎ 더불어 그간 청탁금지법에 대한 주 논의와 쟁점이었던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의 가액 범위 논의에서 더 나아가 법의 본질적인 사안에 보다 중점을 둔 논의와 분석도 필요함. 예를 들어 청탁금지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금품등 수수 금지는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 입증에 곤란한 경우 「형법」상 제재를 받지 않는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취지이기 때문에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있는 금품등 수수는 「형법」상 뇌물죄 등이 최대한 적용되어야 하고 이러한 경우까지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³⁴⁾ 의안번호 210392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의원 대표발의) 2020.9.16.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가 타당한지에 대해서 2년마다 검토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안을 제시함.

것은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법의 취지상 「형법」이 적용될 수 없을 때 보충적으로 청탁금지법을 적용해야 하는데 이에 반하는 사례가 없는지 그간의 축적된 청탁금지법 운영 현황 및 판례를 토대로 분석·검토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임.

- 또한 「형법」상 뇌물죄와 다른 청탁금지법의 주요한 특징으로 양벌규정을 들 수 있는데, 청탁금지법은 법인·단체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인 종업원 외에 그 업무의 주체인 법인·단체도 양벌규정에 따라 제재하도록 하고 있고, 법인·단체가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였다면 양벌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음. 청탁금지법의 주요한 특징인 양벌규정에 따른 제재 또는 면책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신고자 보호 측면에서는 그간 비실명 대리신고 도입,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결정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신설, 구조금 지급근거 신설 등의 개정을 해왔지만, 다른 부패방지 법제에 비해 신고자 보호 규정이 여전히 약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구체적으로 신고자 비밀보장 위반에 대한 벌칙, 신고 방해 및 취소 강요 금지 위반에 대한 벌칙,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한 벌칙, 불이익조치를 받은 신고자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벌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비해 약하게 규정되어 있고,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절차 일시정지 제도도 도입되어 있지 않음. 향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준하도록 신고자 보호 규정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법 위반사항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를 위해서는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위반사실을 통보하는 주체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현재는 위반행위를 한 공직자등의 소속 공공기관의 장이 위반사실을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법 위반사항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제재를 위해서는 소속기관의 장 뿐만 아니라,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조사하는 감독기관 등의 장도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위반 사실을 직접 관할법원에 통보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³⁵⁾

35) 의안번호 210591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의원 대표발의) 2020.11.30.은 법 위반사항에 대한 신속한 제재를 위해서 소속기관의 장 뿐만 아니라, 감독기관의 장 등도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위반 사실을 직접 관할법원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함.

의안번호 210539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대표발의) 2020.11.17.은 각급 소속기관이 위반행위가 발생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에 위반 사실을 통보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거나 관할 법원별 결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여부 등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의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제한 등 위반행위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함.



참고문헌

참고문헌

<단행본>

-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해설집, 2020.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1년 성과분석 및 발전방향 모색 연구, 2017.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효과분석을 통한 발전방향 모색 연구보고서, 2020.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효과 분석을 통한 발전방안 모색 연구, 2021.

<기타 문헌>

-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21-2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503030000&bid=19&act=view&list_no=11147
-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23-33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503030000&bid=19&act=view&list_no=46469
-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2019.11.1.),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402010000&bid=4A&act=view&list_no=8930
-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2022.5.17.),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402010000&bid=4A&act=view&list_no=39144
-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2023.6.29.),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402010000&bid=4A&act=view&list_no=45806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의원 대표발의), 2020.9.16.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대표발의), 2020.11.17.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의원 대표발의), 2020.11.30.

입법평가 ISSUE PAPER 23-14-00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발행일 2023년 10월 31일

발행인 한영수

발행처 한국법제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15 (반곡동, 한국법제연구원)

T. 044. 861. 0300 | F. 044. 868. 9913

등록번호 1981. 8. 11. 제2014-000009호

<http://www.klri.re.kr>

- 본원의 승인없이 轉載 또는 譯載를 禁함.
- 이 책자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15 (반곡동, 한국법제연구원)
T. 044. 861. 0300 F. 044. 868. 9913

